생활숲(마을숲, 학교숲) 조성 계약서

○○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“계약상대자”라 정하고,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“사업시행자”로 하여 다음의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,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, 날인하고 “계약상대자”와 “사업시행자”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조(목적) 본 계약은 『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2조(정의) 제1호에 의거 “계약상대자”의 자발적인 의사로 본 계약 대상지에 “숲 조성 계약”을 체결하고 생활숲(마을숲, 학교숲)을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함께 가꾸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무) “계약상대자”와 “사업시행자”는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계약의 명칭)

① 본 계약은 “생활숲(마을숲, 학교숲) 조성 계약서” 라고 한다.

② 『생활숲』이라 함은 『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2조(정의) 제1항에 의거 “숲 조성 계약”을 체결하고 조성한 녹지공간을 말한다.

제4조(대상지역) 본 계약의 대상지역은 노원구 ○○길 ○○, ○○아파트 내 조성된 별첨의 생활숲(마을숲, 학교숲)을 말한다.

제5조(계약기간)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한다. 다만 숲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(숲 조성·유지·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)에 따른다.

제6조(권리에 관한 사항) 본 계약구역에 식재된 식물 및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계약기간동안 노원구와 “계약상대자”가 공동으로 가진다.

제7조(숲 조성·유지·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) 『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7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및 지원) 및 제8조(도시숲등의 유지·관리) 규정를 따른다.

제8조(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)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“계약상대자”와 “사업시행자”가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.

제9조(계약위반시의 조치)

① 본 계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“사업시행자”는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“사업시행자”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 제②항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사업추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“사업시행자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“계약상대자”와 “사업시행자”의 합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0조(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)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와 “사업시행자”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1조(특약사항 및 계약의 효력)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쌍방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,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2027년 월 일

(계약상대자) ○○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(인)

(사업시행자)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(인)

〈별첨〉 생활숲(마을숲, 학교숲) 위치도



- ○○아파트, ○○동 앞